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38
----------	-------

제출년월일 : 1994. 10. 27.

제출자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등을 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감사기간을 "3일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연장함(안 제2조)
- 나. 지방공기업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함(안 제5조)
- 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국가 위임사무 및 시 위임사무 일부 포함(안 제6조)
- 라.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9조)
- 마.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 2)
- 바.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규정 신설(안 제9조의 3)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구"를 "대구직할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소관상임위원회"를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를 "정기회의 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서"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구청장"을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3조 제3항 후단에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동조 제7항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구본청 각 실과)"를 "대구직할시달서구(구본청 각 실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대구직할시달서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
- 2. 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직할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직할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 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

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 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 증인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감사)① 의회는 <u>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u>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u>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u>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u>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u>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p> <p>③~④ (생략)</p> <p>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u>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2조(감사)①<u>대구직할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u>.....</p> <p>②<u>정기회의 회기 내 7일의 범위내에서</u>.....</p> <p>③~④(현행과 같음)</p> <p>⑤<u>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통보</u>.....</p>
<p>제3조(조사) ①~②(생략)</p> <p>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u>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단서신설)</p>	<p>제3조(조사) ①~②(현행과 같음)</p> <p>③<u>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④~⑥(생략)</p> <p>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u>통지</u>하여야 한다.</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생략)</p> <p>1. <u>당해 지방자치단체(구 본청 각실과)</u></p> <p>2. (생략)</p> <p>3. <u>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u></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생략)</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u>감사 또는 조사는 법 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u></p>	<p>④~⑥(현행과 같음)</p> <p>⑦<u>통보</u>.....</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현행과 같음)</p> <p>1. <u>대구직할시 달서구(구본청 각실과)</u></p> <p>2. (현행과 같음)</p> <p>3. <u>대구직할시 달서구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u></p> <p>4. (현행과 같음)</p> <p>5. <u>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u>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u>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u></p> <p>2. <u>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u></p>

현행	개정 (안)
<p>② (생략)</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직할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직할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u></p> <p>②<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p> <p>③ <u>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 (안)
(신설)	<p>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u>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신설)	<p>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및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u>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u></p>
(신설)	<p>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u>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u></p>
(신설)	<p>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서는 <u>선서서에 의하여 한다.</u>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라고 기재 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제17조(준용규정)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 조례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u></p>	<p>제17조(준용규정)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p> <p>.....</p> <p>.....</p>